

제47회 차량손해사정사 2차 시험 자동차보험(대물) 이론과 실무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시험은 전년과 같이 사례나 계산문제가 없는 시험이었지만, 실무위주의 시험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라 하더라도 쉽게 답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출제경향과 달리 확실한 정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험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보상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4년도 시행)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모범답안】

김석주 강사 작성

문 1.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취지와 ‘고의’ 개념, 상법상 면책 사유와 자동차보험 약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모범답안

약술문제풀이집 P.98 기출5번, 기본서 P.87~88 참조

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취지

보험계약의 체결내용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 의무를 지게 되나,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 한다.

② ‘고의’ 개념

고의란 인식과 행위를 갖춘 심리상태로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는 인식요소와 의욕요소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인식요소를 갖추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③ 상법상 면책 사유

- 1) 상법 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2) 상법 650조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3) 상법 제678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자동차보험에서 중대한 과실을 부책하는 이유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고의는 면책으로 하나 중대한 과실은 부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 1) 중대한 과실은 우연성을 결여한 고의와는 다르고,
- 2) 중과실을 보험에서 담보한다고 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 3) 자동차보험사고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함이 대부분이고,
- 4) 실무상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여 적용하기가 곤란하며,
- 5) 보험 본래 기능면에서도 부책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문 2.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수용성 도장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모범답안

약술문제풀이집 P.290 기출1번, P.307 기출1번, 기본서 P.355.364 참조

① 수용성 도장료 산출 구성 요소

1) 도장요금의 원가구성 요소

도장요금의 원가는 재료비, 도장공임, 가열 건조비로 구성된다.

(도장료 = 재료비 + 도장공임 + 가열 건조비)

2) 재료비 : 주재료와 부재료로 분류되며, 도장 작업 시 사용된 재료량을 실측하여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도료 보존 과정이나 도장 작업 시 손실분을 일정비율 인정한다.

3) 도장 공임 : 실제 소용된 도장작업시간에 1시간당 공임을 곱하여 산출한다. 도장작업시간은 도장작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시간, 공통시간, 할증률 등으로 구분하며, 준비작업시간, 정미작업시간, 여유작업시간 및 퍼티 및 도료건조시간을 포함한다.

4) 가열 건조 비용

열처리를 위하여 부스를 1시간 동안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 1시간당 열처리 원가를 산출하고 실제 소요된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1시간당 열처리 원가에는 부스 감가비용, 인건비, 연료비, 필터교체비, 제잡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부스 가동시간은 부스 예열시간, 건조시간, 플래시 타임, 냉각시간 등을 포함한다.

(산식 = 도장 1회당 부스 가동시간 × 시간당 부스 가동 원가)

② 수용성 도장의 특성

- 1) 안료입자가 미세하여 은폐력이 뛰어나다.
- 2) 유성도료는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수용성도료는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3) 물은 용제보다 증발속도가 8배 정도 느리다.
- 4) 작업방법에 따라 입자배열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도장 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도 도료의 사전조색시스템(RM)과 현장조색시스템(MM)의 비교

1) 사전 조색시스템(RM)

도료업체의 생산공장에서 자동차별 고유 색상에 맞게 사전 조색된 도료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페인트 가게에서 실제 보수 자동차를 확인하지 않기에 이색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하자의 원인이 된다.

2) 현장조색시스템(MM)

가. 정의

도료업체로부터 60 ~ 80종의 기본 원색 도료를 공급받아 차종별 색상 배합에 따른 조색 작업을 통하여 보수자동차에 적합한 색상의 도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나. 필요성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까지 그 색상은 천차만별이며, 다양화된 도료를 사전 조색된 페인트를 전부 구매하기에는 비용과 구매후, 재고 부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사전 조색된 도료의 단점인 이색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현장조색시스템이다.

다. 장점

- ① 사전조색시스템과 달리 기본 원색 70여종만 구비하면 되므로 재고의 위험이 없어 자금 부담이 없으며, 적정량의 도료 제조 및 사용으로 재고 발생을 방지함에 따른 도료 손실의 극소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 ② 체계적인 작업표준화와 기능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최소인원으로 작업능률향상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하다.
- ③ 동일 수준의 인력, 시간 조건에서 고부가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 ④ 신규 자동차의 출시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 ⑤ 이색현상 제거로 인한 품질만족이 된다.

④ 수용성 도장료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입회 시 확인할 내용

1) 도장코드

도장 코드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차량 정보 라벨 스티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차대번호 라벨은 보통 주로 운전석 도어(B 필러 기둥), 보닛, 전면 유리창 안쪽 하단, 그리고 뒤 유리창 쪽에 부착이 되어 있다.

2) 필수조사사항

도장작업 등과 관련해서는 편승수리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수리전, 수리중, 수리후 입회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 도장재료 구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문 3.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사항과 동 견적서에 기재할 내용을 구성요소별로 서술하시오.(15점) 약술문제풀이집 P.313 기출3번, P.318 기출5번 참조

모범답안

1. 견적서 작성을 위한 사전 조사사항

1) 손상상태의 파악

정보 수집(사고유형파악), 손상의 종류파악(사고내용추정), 사고차량의 관찰(자동차구조, 손상형태 파악)

2) 수리방법의 판정

수리방법의 판정 요소(판정 6요소), 손상상태 분류(부품교환여부 판단, 탈착여부 판단)

3) 견적항목의 설정

작업항목(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그 범위와 내용의 표시), 부품항목(부품명칭의 명확성과 부품가격의 정확성, 유닛(Unit)부품의 활용)

4) 견적서의 기재

견적작성의 요건(정확한 손상진단, 간편하고 명확한 견적), 견적서 기재내용, 기재순서 방법(충격의 진행방향, 부위별.기능별로 분류), 기재방법(부품명칭 및 부품가격 등)

2. 견적서에 기재할 내용

견적서의 양식은 자동차 정비공장, 각 보험회사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견적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거의 같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어떤 차를, 어떻게 수리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1) 누구 : 소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2) 어떤 차 : 차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년식, 최초등록일, 차량형식, 바디형태, 엔진형식, 배기량, 미션형식, 등급, 특장품, 도장, 주행거리, 차량시가 등

(3) 어떻게 수리 : 작업 항목, 교환 부품

(4) 어느 정도의 비용 : 부품대, 공임비, 도장비, 부대비용(견인비, 구난비, 기타)등의 합계금액

(5) 기타 : 입고관계(입고일, 입고방법), 수리일수 등

문 4. 대물배상에서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약관 규정과 취지, 적용요령을 설명하고 사고조사요령을 쓰시오.(15점)

모범답안

약술문제풀이집 P.82 기출12번, 기본서 P.93.231~233 참조

1. 약관규정과 취지

1) 약관규정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2) 약관취지

대물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물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인 경우 어떤 피보험자가 이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여도,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 관계로 볼 때, 손해 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적용요령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 상호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이 보상 처리한다.

- 1)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 2) 차량손해에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차량에 한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에 불문하고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구상권 대위 행사하지 않음).
- 3) 동일 렌터카업체 소유차량간 사고

가. 가해차량 운전자가 렌터카업체 피용자로서 렌터카업체 업무에 종사 중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나. 두 차량을 동일인이 임차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임차인의 피용자로서 임차인 업무에 종사 중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다. 두 차량을 동일인이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3. 사고조사 요령

가. 피해물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자 여부 확인

나.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확인

다. 기명피보험자의 작업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휘, 감독자 여부 확인

라. 기명피보험자가 임차인의 업무중 사고인지 확인

문 5.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도를 설명하고 과실경합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로 선처리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부담과 피보험자 및 보험사의 청구권을 설명하시오. (10점)

모범답안

약술문제풀이집 P.243 기출17번, P.247 기출18번 참조

1. 자기부담금 제도

(1) 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면허, 음주, 마약, 약물, 도주사고에 따른 사고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운용 이유

소(小)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책시킴으로서 소(小) 손해에 대한 조사, 평가, 지급 등의 업무비용이 보상액보다 많아지는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피보험자측도 서류제출, 사고조사 협조 등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일정금액까지는 담보를 하지 않음으로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등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사고 유형

자차 무과실 사고로서 피구상처가 존재하는 사고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공제

2. 과실경합 사고시 처리 예시

1) 과실변동이 없는 경우

차량손해액	자차과실	자기부담금 가입형태
900,000원	70%	최소 : 10만원, 최대 : 50만원

가. 손해액의 70% = 900,000원 × 70% × 20% = 126,000원

나. 손해액의 20%가 최소금액인 10만원 보다 많고 최고보다 낮으므로 126,000원 적용

다.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 126,000원

2) 과실변동이 있는 경우 ☞ 과실 무시

☞ 출고 전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과실로 산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납부(피보험자에게 안내 및 사전동의요망)하게 한 후에 과실확정시 과실확정된 부분의 환급액(32,000원)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하고, 공업사에는 608,000원을 지급한다.

차량손해액	자차과실	자기부담금 가입형태
800,000원	70% → 80%로 변동	최소 : 5만원, 최대 : 50만원

가. 출고전 미확정과실 70% ☞ 80만원 × 20% = 16만원

나. 출고후 확정과실 80% ☞ 80만원 × 20% × 80% = 128,000원, 차액 32,000원을 피보험자에게 환급

다. 출고전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우선 손해액의 20%를 납부하게 한 후에 과실확정시 정산(환급)하도록 함

3) 차량가액과 중고차시세 차이가 있는 자차 무과실 선 처리건의 경우

☞ 자차 무과실로서 피구상처가 존재하는 사고이므로 최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차는 자차손해액 400만 - 자기부담금 10만 = 390만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선처리 지급하고, 중고차량 시세 한도 내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수리하는 경우 : 360만원(300만원 × 120%), 수리하지 않은 경우(미수선 수리)에는 300만원을 구상청구하게 된다.

차량가액	중고차시세	자차손해액	자기부담금 가입형태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최소 : 10만원, 최대 : 50만원

- 가. 자차 무과실 사고로서 피구상처가 존재하는 사고이므로 최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나. 자차 선 처리 : 400만- 자기부담금 10만= 390만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지급
 다. 구상청구 : 중고차량 시세 한도 내에서 구상금 청구 (수리하는 경우 : 360만원, 수리하지 않는 경우 : 300만원)

문 6. 자동차보험사고 과실상계의 의의와 차대차사고 상대설의 의미를 설명하시오.(5점),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관한 다음 유형의 기본과실비율(동종차량기준)을 쓰시오.(5점) (10점)

[유형]

- ① 후행 직진(A차량)대 선행 진로 변경(B차량) 사고 = A() : B ()
 ② 동일방향 주행 중 좌(A차량)대우(B차량) 동시 차로 변경 사고 = A() : B ()
 ③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차량)대 좌측 직진(B차량) 사고
 (동일 폭 도로, 동시 진입) = A() : B ()
 ④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A차량)대 맞은편 직진(B차량) 사고 = A() : B ()
 ⑤ 동일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A차량) 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B차량) 사고
 = A() : B ()

모범답안

약술문제풀이집 P.184 기출8번, 기본서 P.218~219 참조

1. 과실상계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의 확대 등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상계 내지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여기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2. 차대차 사고 상대설

과실상계에 관하여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대비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즉 차대차 사고로서 쌍방과실인 경우, 양자는 손해배상의무자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차:차 사고의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3. 유형

- 1) 후행 직진(A차량) 대 선행 진로변경(B차량) 사고
 = A(30%) : B(70%)
 2) 동일방향 주행중 좌(A차량)대 우(B차량) 동시 차로 변경사고
 = A(50%) : B(50%)

-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차량)대 좌측 직진(B차량) 사고(동일쪽 도로, 동시 진입)
= A(40%) : B(60%)
- 4)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A차량)대 맞은편 직진(B차량) 사고
= A(50%) : B(50%)
- 5) 동일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A차량)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B차량) 사고
= A(40%) : B(60%)

문 7. 대물배상 피해물이 건축물, 가재 및 집기비품, 상품인 경우의 손해산출에 관하여 약술 하시오. (10점) 기본서 P.191~194 참조

모범답안

1. 건물

- 1) 건물의 멸실,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직전가액 상당액과 새로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
- 2) 사고 직전 가액의 평가는 평가대상인 피해건물을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로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 경과년수 및 사용손모에 상당하는 감가액을 공제하여 사고 직전 가액을 산정한다.
- 3) 수리비의 감가적용은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가재 및 집기비품

가재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로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하여 말한다.

집기비품이란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영업용 집기비품이라 부른다.

1) 지급형태

피해물이 사고직전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고 직전 가액을 보상한다.

2) 사고직전 가액의 평가

- 가. 피해물의 규격, 용도, 성질, 메이커, 구입금액, 구입일자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
- 나. 피해물과 동종물건의 매매사례를 물가조사표와 백화점의 가격표 등을 참고로 조사한다.
- 다. 가재 및 집기는 사용으로 인하여 다소의 손모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물의 사고 당시 재

조달가격에서 경과기간(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사고 직전 가액을 산정한다.
라. 감가상각

가재 및 집기비품의 내용년수와 경과기간(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에 따라 품목별로 감가율을 적용하고, 피해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기간, 제품의 질 등으로 보아 개별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가재의 경우에는 25%, 집기비품의 경우에는 20~40%로 일괄 감가하여 적용한다.

마. 잔존물가액 공제

피해물 중 잔존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제하거나 매각하여 환입한다.

3. 상품

상품이란 건물, 가재, 집기류 등의 계속 사용되는 재물과는 달리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가치를 지닌 재물로 포장용품, 경품, 견본, 전시품, 진열품 등을 포함한다.

- 1) 피해물이 사고 직전의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을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가액을 보상한다.
- 2) 피해물중 수리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품질저하)된 경우에는 가격하락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 3) 의약품, 화학원재료, 식료품 등과 같이 경미한 손해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한다.

4) 피해물 중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예술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5) 사고 직전 가액의 평가

- 가. 상품의 가격은 품목, 수량, 단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해물의 가격, 용도, 품질, 메이커, 매입과 판매경로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
- 나. 사고당시의 수량과약을 위하여는 피해물의 장부, 매입전표, 출입고증, 송장 등 증거서류를 징구하여 현장의 피해물과 대비 확인한다.
- 다. 상품은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사고당시의 동종 상품의 매입가격에 운임, 기타 제비용을 가산한 매입원가(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고로 인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나 이익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 라. 제조공장의 원자재가격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반제품, 제품품은 원재료가격에 각 공정에 따른 가공비(직접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가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제품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상품 중 재고품, 파지품, **유행** 또는 철이 지난 품목 등 사장품(Dead Stock)에 대하여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 평가하여야 한다.

7) 잔존물가액 공제

피해물 중 잔존물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제하거나 매각하여 환입한다.